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10

발의연월일: 2022. 8. 1.

발 의 자: 박성민・金炳旭・김승수

김용판 • 이달곤 • 이명수

이채익 • 이태규 • 임이자

전주혜 · 조명희 · 최승재

하영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소방통신망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은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신망을 구축·운 영하여야 한다.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소방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소방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통신망 회선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청장 등은 이 법 시행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통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2(소방통신망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
	방서장은 119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
	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
	<u>방서장이 소방통신망을 구축·</u>
	<u>운영할 때에는 소방통신망의</u>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통
	신망의 회선을 이중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화된 각 회
	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방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u>정한다.</u>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	제4조의3(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
치·운영) (생 략)	치·운영) (현행 제4조의2와 같
	음)